

등록번호	교통정책과-8759
등록일자	2015.6.1.
결재일자	2015.6.2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교통정책팀장	교통정책과장	안전교통국장		
조윤희	황관웅	장원석	전결 06/02 조흥기		
협조자					

##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계획

### 【목 적】

- 우리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태를 파악하여 체납 유형별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금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

### 【추진근거】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29조
-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-10275(2014.05.19)호 “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”

### 【부과·징수 현황】

(단위:건/백만원, 2015.05.01기준)

부과년도	부과금액		징수금액		체납액		징수율 (금액기준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전체	175,102	204,602	173,317	203,109	1,785	1,493	99.3%

### 【체납정리 계획】

- 대상 : 1,785건 / 1,493백만원 (2015.05.01 기준)
- 목표 : 체납금의 45% 이상 징수, 96%이상 압류처분(성과계획서 목표 기준)
- 추진기간 : 연중 (중점추진기간 : 2015.05.18. ~ 2015.06.30)
- 중점추진사항
  -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매월 발송
  -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 및 압류 시행
  -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

강 남 구  
(교통정책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•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-10275(2015.05.19)호 “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강화 계획”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우리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태를 파악하여 체납 유형별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금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근거 : 2015.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 0) (신규 : 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0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0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0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0 ) ⑤ 시장조사 ----- ( 0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0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0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0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0 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타 구 실태파악 결과 -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
전문가 면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
#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계획

우리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태를 파악하여 체납 유형별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 체납 징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금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

## I 교통유발부담금 현황

### □ 추진근거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
-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-10275(2015.05.19)호 “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계획 통보”

### □ 개요

#### ■ 부과개요

- 부과대상 :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이상인 건축물(주거용 제외)
  - ※ 집합건물의 경우, 개별 소유면적이 100.0㎡ 이상인 자
- 부과건수 : 약 4,928개소 / 8,912건 (2015년도 예상)
- 부과대상자 : 2015. 7. 31 현재 시설물 소유자
- 부과기간 : 2014. 8. 1 ~ 2015. 7. 31
- 납부기간 : 2015. 10. 16 ~ 10. 31 (고지서발송 : 2015. 10. 5)
- 부담금 산정기준 : 시설물 연면적 × 단위부담금(원/㎡) × 교통유발계수
  - ※ 단위부담금(1㎡당)
    - 350원 : 3,000㎡미만 또는 3,000㎡이상이나 주차장 10대 미만
    - 700원 : 3,000㎡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
  - ※ 교통유발계수 : 0.47(공장) ~ 10.92(백화점, 대규모쇼핑센터)
    - ☞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

## II 부과·징수 현황

### □ 부과·징수 현황

[단위:건/백만원, '15.05.01 현재]

구 분	부과액		징수액		체납액		징수율 (금액기준)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
<b>합 계</b>	175,102	204,602	173,317	203,109	1,785	1,493	<b>99.3%</b>
2014년	7,968	15,818	7,561	15,492	407	326	97.9%
2013년	11,816	16,167	11,628	16,012	188	155	99.0%
2012년	11,727	16,213	11,588	16,119	139	94	99.4%
2011년	11,679	16,304	11,574	16,164	105	140	99.1%
2010년	11,612	15,745	11,536	15,687	76	58	99.6%
2009년 이전	120,300	124,355	119,430	123,635	870	720	99.4%

### □ 유형별 체납현황 분석

#### ■ 체납 사유 분석

- 법인의 경우, 대부분 사업의 부도나 파산간주 등으로 압류물건은 강 제경매, 임의경매 등으로 처리되고 있음
  - ☞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진, 무재산, 폐업·부도 등 납부능력 저하
- 국내 거주자 체납의 경우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, 재산조회 시 (부동산, 차량재산 조회 가능) 재산이 조회되지 않으며, 기압류된 물건 도 임의경매개시 결정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수 존재
  - ☞ 조세채권에 비해 체납처분이 약하므로 자진납부 의식 부족

#### ■ 문제점

- 한정적 재산조회
  -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비밀보장 조항에 따라 금융정보는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회에만 한정적으로 제공이 가능하여, 준조세인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

- 현재 금융자산 조회 제약으로 타부서에서 통보받는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정보만으로 재산압류처분을 집행하고 있고, 상당수의 체납건이 압류재산의 강제경매로 압류해제된 후 체납자의 재산무소유 등의 사유로 시효결손(5년) 처분되고 있어 사실상 강제징수가 어려움.
- 결손처분의 어려움
  - 압류물건이 경매로 매매될 경우, 매매일로부터 시효완성기간 5년이 경과 되어야 시효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, 불납결손 처리는 모든 재산을 조회하여 체납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나, 부동산, 자동차 등 일반적 조회 외에는 재산조회 협조가 곤란한 실정
  - 재산을 압류하여도 실제 경매 시 교통유발부담금은 후 순위에 밀려 교부금을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법원의 직권 압류해제 후에는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아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

- 재산 미압류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이행
  - 재산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후 압류 이행 : 교통정책과-4727(2015.3.24.) 및 4843(2015.3.26.)
  - 압류예고문 발송 후 익일 재산압류 실시 : 2015. 6. 2. 압류촉탁예정
- 상습·고액 체납자에 체납징수 활동 강화
  - 압류재산 재산권 변동사항 정기적으로 확인·관리
  - 고액체납자 (500만원 이상) 관리카드 작성 및 집중 관리
- 시효경과 또는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
  - 시효경과,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등은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 예방
- 신개념 체납징수기법 도입 추진
  - 신탁재산, 법원 공탁금, 국세환급금,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 압류
  - 체납자의 보증보험, 손해보험 등 가입내용 일제조사 후 체납징수
  -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 대한 채권 확보

### III 추진 계획

- 정비대상 : 1,705건 / 1,493백만원 (2015.05.01기준)
- 추진기간 : 2015년도 연중 (중점추진기간 : 2015.05.18 ~ 2015.06.30)
- 목표 (성과계획서 기준)
  -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
    - 전체 체납액의 45% 이상 징수
  - 과년도 체납건에 대한 압류실적
    - 전체 체납액의 96% 이상 압류처분
- 중점추진계획
  - 체납자 현황 파악 및 유형별 징수대책 마련
    - 체납자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(주소, 주민등록번호, 재산현황)
    - 주기적인 납부 독려문 발송 및 전화·대면 등을 통한 독려

#### □ 세부추진계획

- 추진경위
  - 2014년도 체납자에 대한 1차 독촉고지서 발송 : 2014.11.18
  - 1차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: 2014.12.05
  - 2014년도 체납자에 대한 2차 독촉고지서 발송 : 2015.03.05
  - 2014년도 체납자에 대한 3차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발송 : 2015.05.06
  - 제3차 독촉고지서및압류예고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: 2015.05.14
  -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제1차[동산] 촉탁 실시 : 2015. 5. 27
- 향후추진계획
  - 2014년 체납자 제2차 압류 촉탁(2015. 6. 15限)
    - 제2차 압류처분 : 부과대상 시설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소유권 이전 자 중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

- 2014년 체납자 제3차 압류 촉탁(2015. 6. 30限)
  - 제3차 압류처분 대상자 : 과세지 및 동산 무소유자를 부동산 정보  
과에 전국 재산 조회 의뢰 후, 소유 부동산 압류 예정
  - 결손처분 :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등 결손처분
- 2015.7~12월 : 매월체납고지서발송 및 체납자주소지 추적 등 상시압류

## IV 행정 사항

- 서울시 체납정리계획 보고 : 2015. 06. 03 限
- 서울시 체납금 징수실적 보고 : 2015. 08. 07 限